

규격서 및 납품조건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·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‘간접비’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기타사항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2018.8.2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대상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□ 부대품 규격서

- 부대품 : 혼안테나 2종 4대
- 공통적용 : 제조사 Calibration 보고서 또는 KOLAS 인정 교정기관 교정성적서(이득, VSWR, PATTERN 등 안테나 팩터값 포함)

순번	품 명	규 격	수량	비 고(예시)
1	혼안테나 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파수 범위(Frequency Raange) : 18 GHz ~ 26.5 GHz 이상 ▶ 안테나 특성(Antenna Factor&Gain) : [첨부1] 동일 또는 이상의 선형특성 : 안테나 이득 20 dBi 이상 ▶ 3 dB 빔폭 (Half Beam width angle) : 15° 이상 ▶ 안테나 VSWR : < 1.5:1(Average) ▶ 안테나 아답터 : WR42 to 2.92 mm female ▶ 액세서리 : 케이스 및 브라켓, 압소버 	2	
2	혼안테나 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파수 범위(Frequency Raange) : 26.5 GHz ~ 40 GHz 이상 ▶ 안테나 특성(Antenna Factor&Gain) : [첨부2] 동일 또는 이상의 선형특성 : 안테나 이득 20 dBi 이상 ▶ 3 dB 빔폭 (Half Beam width angle) : 15° 이상 ▶ 안테나 VSWR : < 1.5:1(Average) ▶ 안테나 아답터 : WR28 to 2.92 mm female ▶ 액세서리 : 케이스 및 브라켓, 압소버 	2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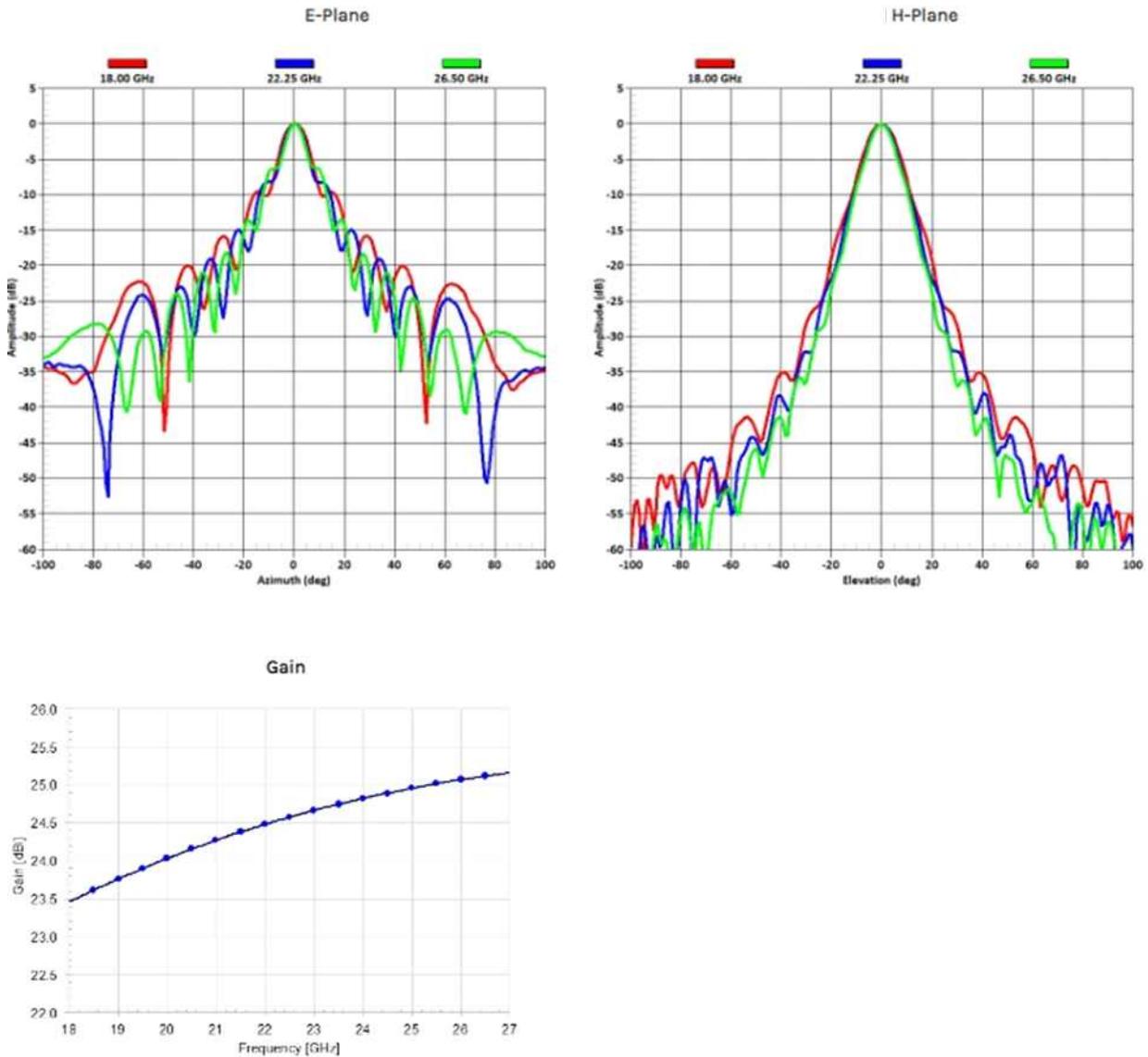
□ 공급 및 납품에 관한 조건

- 본 장비는 안테나 측정용 안테나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보유중인 시스템(챔버 시설 등)과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시험 장비는 제시한 규격의 시험방법에 근거하여 Case, Bracket, Absorber 등 기본 액세서리 및 기타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공급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,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은 납품할 수 있다.
- 공급 물품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, 제조자의 1년 유지보수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,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“정부 물품조달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.
- 공급자는 물품 수령 후 훼손되지 않은 새상품(태그나 상표 유지)인 상태로 14일 이내 물품교환 등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
- 공급자는 납품 후 발주부서와 공동으로 물품검수를 받아야 하며, 검수가 완료된 물품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.
- 납품방법 및 기한
 - 납품 방법 : 일괄 납품
 - 납품 기한 :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
- 검수 및 납품장소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층 전파기술센터

(첨부1)

혼안테나 | 선형 특성(Factor)

Typical Measured Data



(첨부2)

혼안테나 II 선형 특성(Factor)

Typical Measured Data

